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12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 15일 전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다시 발급하도록 하는 등의 연장신청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현재 품질인증 표시 도안 및 색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본 도안을 참고하되 제품별 재질·디자인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영양성분 함량의 색상·모양 표시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의 유형 정비  
(안 제9조의2제2항)

표시 대상이 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

나. 품질인증 신청·변경신청 시 제출서류에 인용조문 정비 등(안 제11 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제13조의2제2항, 제19조제3항)

품질인증 신청·변경신청 시 제출하는 영양성분 등 검사성적서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인용 조문 반영 등 다른 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 등 정비

다. 어린이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제도 도입(안 제13조의3)

어린이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3년이 만료되기 전 15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신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연장심사를 하여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하는 등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라. 품질인증표시 도안 및 색상 기준을 기본 도안을 참조하되 제품별 재질·디자인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 4)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호

○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slee@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라목 중 “제외한다), 아이스크림류”를 “제외한다)”  
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어육가공품”을 “어육가공품류”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자. 빙과류 중 아이스크림류

제9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캔디류, 빙과류”를 “캔디류”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빙과류 중 빙과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  
호·제2호 및 제8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영양성분  
등 품질인증기준에 관한 시험·검사성적서. 다만, 영양성분 등을 검  
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춘 자체 연구시설 및 실험실에서 검사한  
경우 그 관련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  
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증 사본 또는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증 사본(해당 식품에 대하여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5항 또는 제8조제4항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제13조의2제2항제1호 중 “품질인증서”를 “품질인증서 원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서류”를 “서류(품목제조보고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8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영양성분 등 품질인증기준에 관한 시험·검사성적서(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영양성분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춘 자체 연구시설 및 실험실에서 검사한 경우 그 관련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 사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5항 또는 제8조제4항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 품질인증 연장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여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5일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장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연장 심사를 하여 적합한 경우에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 심사는 제12조의 품질인증 심사를 준용한다.

③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다시 발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폰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1.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절차 및 방법

제19조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나목6)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호 마목3)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2호바목3)을 삭제한다.

6)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 등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라) 제과점영업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둘 이상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1)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2)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로서 제과점 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별표 2 제2호다목1) 중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표시도형 및 글씨의 색상

가목의 기본 도안을 참조하여 용기·포장의 재질과 디자인에 맞게 다양한 색상과 크기를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의 제1호가목 중 “제7조제2호에”를 “제21조제2호에”로 하고, 같은 목의 “제5호나목(5)”를 “제5호나목

2)”로 하며, 같은 목의 “같은 목 (9)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를 “같은 목 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작성요령란의 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에”를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신청내용란의 “1회 제공량”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첨부서류란의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첨부서류 | <p>2.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8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영양성분 등 품질인증기준에 관한 시험·검사성적서. 다만, 영양성분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춘 자체 연구시설 및 실험실에서 검사한 경우 그 관련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p> <p>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증 사본 또는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증 사본(해당 식품에 대하여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p> | 수수료<br>5만원 |
|------|---|------------|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1회 제공량”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의 “영업허가(신고)번호”를 “영업등록(신고)번호”로 한다.

별지 제9호의2 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의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의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첨부서류 | <p>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또는 변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품목제조보고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p> <p>3.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8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영양성분 등 품질인증기준에 관한 시험·검사성적서(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영양성분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춘 자체 연구시설 및 실험실에서 검사한 경우 그 관련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p> <p>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 사본(</p> | 수수료<br>없음 |
|------|---|-----------|



|  |  |  |
|--|--|--|
|  | <p>「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5항 또는 제8조제4항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p> <p>7. 그 밖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p> |  |
|--|--|--|

별지 제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첨부서류는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신청인  | 업소명(상호)              |  |            |
|      | 영업의 종류               |  | 영업등록(신고)번호 |
|      | 소재지                  | 본사<br>(전화번호 : )                                      |            |
|      |                      | 공장<br>(사업장)<br>(전화번호 : )                             |            |
|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
| 신청내용 | 제 품 명                | 총 내 용 량  |            |
|      | 식 품 의 유 형            | 1회 섭취참고량   |            |
|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번호(인증일) | 식품안전관리인증번호(인증일) 또는<br>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번호<br>(등록일) |            |
|      | 유효기간 연장사유            |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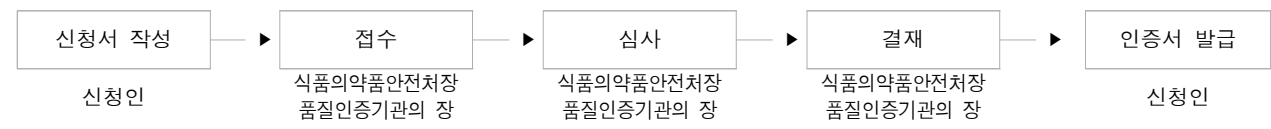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품질인증기관의 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원본 | 수수료<br>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식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일 당시 종전의 별표 4에 따른 품질인증 표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품질인증 신청 또는 품질인증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11조, 제13조의2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9조의2(영양성분의 함량 색상 · 모양 표시 대상 식품)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식품에 대한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p> <p>1. 영양성분 중 총지방, 포화지방, 당 및 나트륨의 표시</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다.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0px;">라.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및 발효유를 <u>제외한다</u>), <u>아이스크림류</u></p> <p style="padding-left: 20px;">마. <u>어육가공품</u> 중 어육소시지</p> <p style="padding-left: 20px;">바. <u>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 및 국수</u></p> <p style="padding-left: 20px;">사. · 아. (생 략)</p> <p>&lt;신 설&gt;</p> <p>2. 영양성분 중 당의 표시</p> <p style="padding-left: 20px;">가. 과자류 중 <u>캔디류, 빙과류</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 다. (생 략)</p> <p>&lt;신 설&gt;</p> | <p>제9조의2(영양성분의 함량 색상 · 모양 표시 대상 식품) ① (현행과 같음)</p> <p>② -----<br/>-----<br/>-----.</p> <p>1. -----<br/>-----</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다.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라. -----<br/>-----<br/>----- <u>제외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마. <u>어육가공품류</u> -----<br/>-</p> <p style="padding-left: 20px;">바. <u>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사. · 아.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자. <u>빙과류 중 아이스크림류</u></p> <p>2.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u>캔디류</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 다.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라. <u>빙과류 중 빙과</u></p> |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생략)

4. 「식품위생법」 제19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사전 확인등록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식품위생법」 제19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사전 확인등록 식품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생략)

② (생략)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품질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 6. (생략)

<신설>

사실을 갖춘 자체 연구시설 및 실험실에서 검사한 경우 그 관련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증 사본 또는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증 사본(해당 식품에 대하여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①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5항 또는 제8조제4항에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 사항 변경보고서 또는 변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양성분검사성적서 또는 검사 증명서(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 다른 등록 유효기간

② -----  
-----  
-----  
-----  
-----  
-----  
-----  
-----  
-----.

1. ----- 품질인증서 원본
2. -----  
-----  
----- 서류(품목제조보고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한다)
3.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8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영양성분 등 품질인증기준에 관한 시험·검사성적서(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영양성분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춘 자체 연구시설 및 실험실에서 검사한 경우 그 관

4.·5. (생 략)

<신 설>

6. (생 략)

③ (생 략)

<신 설>

련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4.·5. (현행과 같음)

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 사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5항 또는 제8조제4항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 품질인증 연장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여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5일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장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연장 심사를 하여 적합한 경우에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 심사는 제12조의 품질인증 심사를 준용한다.

③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다시 발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폰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1.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절차 및 방법

제19조(식생활 안전·영양수준 평가 방법) ①·② (생략)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

제19조(식생활 안전·영양수준 평가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문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품질 인증 심사 및 재심사 절차: 2014년 1월 1일

-----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삭제>